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주민등록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안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함.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6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는 변경 심사 및 증빙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보존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제1항”으로, “전산정보처리 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을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의2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행정기관·공공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전산조직”을 각각 “주민등록정

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전산조직”을 각각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후단 중 “제36조제3항 단서를”을 “제36조제3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1조 단서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8조 전단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자에게만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한다.

②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 ④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6항제2호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산조직”을 각각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60조제11호의2 중 “5년”을 “30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1. <u>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 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u> 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u>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 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 보시스템”이라 한다)</u>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의 부여는 <u>전산조직</u> 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 ----- <u>주민등록정 보시스템</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보존)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보존)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 관의 장은 <u>전산조직</u> 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	2.----- ----- ----- <u>주민등록정보시스템</u> ----- ----- -----

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 ③ (생 략)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u>전산조직</u> 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④ ----- ----- ----- ----- ----- ----- ----- <u>주민등록정보시스템</u>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u>전산조직</u>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 ----- <u>주민등록정보시스템</u> ----- ----- ----- ----- -----.
②	②

1. ~ 4. (생략)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

1. ~ 4. (현행과 같음)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생략)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현행과 같음)

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⑥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생략)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6조제3항을-----,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
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
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
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
라 제출받은 사진을 전산조직으
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⑦ ~ ⑧ (생 략)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
인서의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
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
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
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
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

① ~ ② (생 략)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
인서의 교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 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전산조치를 통하여 사용불능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
등록증의 정리)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illegible]

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
등록증의 정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

룩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초본 교
 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에 따라 해당자의 주
 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
 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
 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
 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
 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
 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
 라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룩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정보시스템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자에게만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한다.

②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④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u>있다. 이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u> <u>⑧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전산조직</u> 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2. <u>주민등록정보시스템</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u>전산조직</u>	①-----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u>전산조직을</u>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 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 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u>주민등록정보시스템</u> ----- ----- -----.
③ ~ ⑤ (생 략)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u>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 제5</u> <u>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u> <u>별표4와 같다.</u>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 -----.
1.~11.(생략)	1.~11.(현행과 같음)
11의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u>5년</u>	11의2 -----: <u>30년</u>
12.~24.(생략)	12.~24.(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행정안전부장관 (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7. (생략) <u><신설></u> ②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u>18.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등록 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2